

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공람 공고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89호(2006.05.18.)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7-55호(2007.06.28.)로 정비구역 변경·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』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을 실시합니다.

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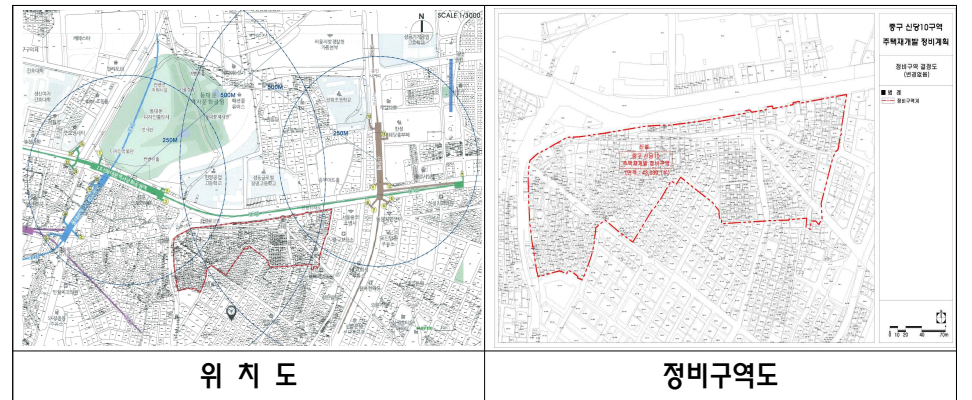
중 구 청 장

- 공람기간 : 2015.6.2.(화) ~ 2015.7.3.(금)
- 공람의견 제출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☎02-3396-5723)
- 게재방법 : 중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
- 공람내용 :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
 - 사업명칭 : 신당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사업위치 :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
 - 사업면적 : 43,039.1㎡
- 해제사유 :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1항 5호(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) 규정에 의거 해제
- 정비구역지정 해제내용
 - 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당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

나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

구분	생활권 유형	구역 번호	동명	지번	면적	용적률	층수	건폐율	추진 단계	사업시행 방식	정비 유형	비고
기정	A	10	신당1동	236번지 일대	4.3ha	210%	제한없음	50%	2	주택재개발	전면개발	
변경	해 제											

○ 위치도 및 구역도



위 치 도

정비구역도